

1. 개정이유

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어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제명을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하고,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제명을 「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
- 나. 근거 법령인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로,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」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,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”를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”를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</u>	<u>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비상대 비자원 관리법</u>」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 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「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2조제2항</u>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 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 략) 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이 「<u>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 다)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 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	제1조(목적) ----- 「<u>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「<u>비상대비에 관 한 법률</u>」----- <u>제2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「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(이하 “중점관리대상자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